공정거래위원회	보도참고자료		소비자24
보도 일시	2022. 8. 1.(월) 10:00	배포 일시	2022. 8. 1.(월) 08:30
담당 부서	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	책임자	과 장 이동원 (044-200-4405)
		담당자	사무관 권혜지 (044-200-4407)

건보공단이 보건·의료생협 관리·감독 업무 위탁받게 돼

-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-

□ 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조성욱, 이하 공정위)는 경제규제혁신의 일환으로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(이하 '생협법')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2년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,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정관변경 처리기한 규정 신설

②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처리기한 조정

③ 보건·의료생협 감독업무 위탁범위 확대

1 개정안 주요 내용

가. 정관변경 인가 처리기한 규정 신설[안 제8조의2]

□ (개정배경) 생협의 정관변경은 설립인가와 마찬가지로 시·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(법 제23조 제3항), 현행법에서는 정관의 변경인가 처리기한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었다.

○ 이에 따라 생협은 정관변경 신청 후 인가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예측할 수 없어 생협 사업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.

□ (개정내용) 시·도지사는 정관의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, 인가하지 않는 경우 구체적 이유를 적시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였다.

나.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처리기한 조정[안 제17조 제2항]

□ (개정배경) 전국연합회가 연합회보다 상위조직*임에도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처리기한(20일)이 연합회(30일)보다 더 짧게 설정되어 있었다.

* 연합회는 5개 이상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할 수 있고, 전국연합회는 15개 이상 조합(발기인이 되는 연합회 소속 조합 포함)이 발기인이 되어야 설립할 수 있다.

□ (개정내용)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처리기한을 60일*로 조정하였다.

*「협동조합기본법」은 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 모두 60일로 정하고 있고, 「농업협동조합법」의 경우에도 농협은 60일, 농협중앙회는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.

다. 보건·의료생협 감독업무 위탁범위 확대[안 제17조 제2항]

□ (개정배경) 시·도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보건·의료조합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무장병원이 난립하는 등 의료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었다.

ㅇ 시·도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"건보공단")에 보건·의료생협 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나, 시행령 규정에 따라 단순 서류확인 업무만 위탁할 수 있어 실질적 관리·감독 업무 위탁에 한계가 있었다.

* 감사원에서도 제한적인 업무위탁 규정으로 인한 의료소비자피해를 지적한 바 있다.

ㅇ 이에 공정위는 「경제규제혁신 TF」보건의료규제반을 통해 보건복지부·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보건·의료생협 관리·감독 관련 규제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.

□ (개정내용) 의료기관 관리·감독에 전문성이 있는 건보공단에 보건·의료생협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를 지나치게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였다.

2 기대효과 · 향후 계획

□ **(기대효과)** 생협 관리·감독 관련 규제를 개혁함으로써 건실한 생협 발전 및 원활한 생협 운영은 물론, 의료소비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정관변경 인가 일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향상되어 생협 운영이 원활해지고,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처리기한 현실화로 설립인가 요건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가능해져 건실한 전국연합회의 설립·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.

○ 아울러 보건·의료생협에 대한 실효적인 관리·감독이 이루어짐에 따라 보건·의료생협이 건전하게 운영되어 조합원의 건강 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.

□ **(향후 계획)**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·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, 법제심사, 차관·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초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.

※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

▶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9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**예고사항에 대한 의견**(찬성 · 반대 · 수정 의견과 그 이유), **성명**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**주소**, **전화번호**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,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* 우편 : 세종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위 소비자정책과(우: 30108)
* 전자우편 : diydim@korea.kr (권혜지 사무관)
* 팩스 : 044-200-4475

[붙임]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·구조문 대비표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**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**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8조의2 시·도지사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10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인가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.
제8조의2 ~ 제8조의6 (생 략)	제8조의3 ~ 제8조의7 (현행 제8조의2부터 제8조의6까지와 같음)
제17조(전국연합회의 설립절차 등) ① (생 략) ②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제6조제1항"은 "제17조제1항"으로 본다.	제17조(전국연합회의 설립절차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. ---------- "제17조제1항"으로, "20일"은 "60일"----------.
제17조의2(업무의 위탁) 시·도지사는 법 제81조제7항에 따라 보건·의료조합의 감독을 위하여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업무(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 등을 단순 확인하는 업무에 한정한다)를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.	제17조의2(업무의 위탁) ---------- 업무----------.